

3.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매입 시 매입가격 결정 방법은?

→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**필지별 감정평가금액**(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현지조사 가격 등 고려)으로 결정

4.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 방법은?

→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은 **약정체결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부터 매월 15일에 지급**(15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)하며, 매월 농지이양자가 지정한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함

5. 종전 경영이양직불 임대이양 약정자가 농지이양 은퇴직불 약정자로 전환한 경우 지급 기간과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?

→ 농지이양은퇴직불은 **최대 84세까지 지급**받을 수 있으나, 경영이양직불로 이미 지급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**10년을 초과할 수 없음**. 아울러 남은 기간만큼은 **농지이양은퇴 직불 지급 단가로 변경**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

6.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약정체결 후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→ **신청할 수 없음**. 다만,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약정체결 당시 계속 경작을 허용 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**공익직불금을 신청**할 수 있으나, **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액만큼 농지 이양은퇴보조금을 차감**함

7. 농지이양자가 사망하는 경우 보조금을 누구에게 지급하나요?

→ **배우자가 약정을 승계**하는 경우에 기존 지급약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나, **배우자가 없는 경우 약정을 해지**함

한국농어촌공사 지사별 연락처

| 본부명 | 지사명 | 사무실 연락처 |
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
| 경기 지역본부 | 여주·이천 | 031-887-7508 |
| | 양평·광주·서울 | 031-770-8015 |
| | 화성·수원 | 031-240-4989 |
| | 연천·포천·가평 | 031-860-8924 |
| | 파주 | 031-950-3234 |
| | 고양 | 031-929-9411 |
| | 강화·용진 | 032-930-2510 |
| | 김포 | 031-980-8107 |
| | 평택 | 031-680-5669 |
| | 안성 | 031-678-3531 |
| | 홍천·춘천 | 033-430-9511 |
| | 원주 | 033-749-1606 |
| | 강릉 | 033-650-3213 |
| | 영북 | 033-630-0120 |
| 강원 지역본부 | 철원 | 033-450-1333 |
| | 청주 | 043-290-0514 |
| | 보은 | 043-540-2523 |
| | 옥천·영동 | 043-730-2512 |
| | 진천 | 043-530-5752 |
| | 괴산·증평 | 043-830-5116 |
| | 음성 | 043-871-7323 |
| | 충주·제천·단양 | 043-841-3024 |
| | 천안 | 041-539-7092 |
| | 공주 | 041-850-6433 |
| 충북 지역본부 | 보령 | 041-930-7843 |
| | 아산 | 041-539-7133 |
| | 서산·태안 | 041-660-8534 |
| | 논산 | 041-730-2127 |
| | 세종·대전·금산 | 044-860-3310 |
| | 부여 | 041-837-9529 |
| | 서천 | 041-950-7707 |
| | 청양 | 041-940-1730 |
| | 홍성 | 041-630-5719 |
| | 예산 | 041-330-3533 |
| | 당진 | 041-351-9157 |
| | 남원 | 063-620-2014 |
| | 순창 | 063-650-7030 |
| | 동진 | 063-540-1141 |
| 충남 지역본부 | 부안 | 063-580-1015 |
| | 군산 | 063-440-5615 |
| | 익산 | 063-860-0033 |
| | 전주·완주·임실 | 063-270-0522 |
| | 고창 | 063-560-1556 |
| | 정읍 | 063-530-0312 |
| | 무진장 | 063-350-7031 |

| 본부명 | 지사명 | 사무실 연락처 |
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전남 지역본부 | 광주 | 062-380-8624 |
| | 순천·광양·여수 | 061-740-1135 |
| | 나주 | 061-330-9522 |
| | 담양 | 061-380-4115 |
| | 곡성 | 061-360-1183 |
| | 구례 | 061-780-3106 |
| | 고흥 | 061-830-2232 |
| | 보성 | 061-850-2521 |
| | 화순 | 061-370-8517 |
| | 장흥 | 061-860-7602 |
| | 강진 | 061-430-7725 |
| | 해남·완도 | 061-530-1513 |
| | 영암 | 061-470-5537 |
| | 목포·무안·신안 | 061-260-5524 |
| 경북 지역본부 | 함평 | 061-320-5213 |
| | 영광 | 061-350-6535 |
| | 장성 | 061-390-8634 |
| | 진도 | 061-540-5421 |
| | 포항·울릉 | 054-720-7006 |
| | 경주 | 054-778-1006 |
| | 안동 | 054-850-5723 |
| | 구미·김천 | 054-712-3412 |
| | 영주·봉화 | 054-639-5022 |
| | 영천 | 054-339-5005 |
| | 상주 | 054-531-3614 |
| | 문경 | 054-550-5313 |
| | 경산·청도 | 053-819-6011 |
| | 의성·군위 | 054-830-8123 |
| 경남 지역본부 | 창녕·영양 | 054-870-0513 |
| | 영덕·울진 | 054-730-5011 |
| | 고령 | 054-950-0721 |
| | 성주 | 054-930-0700 |
| | 칠곡 | 054-800-5000 |
| | 예천 | 054-650-7123 |
| | 달성 | 053-610-3823 |
| | 김해·양산·부산 | 055-320-4832 |
| | 고성·통영·거제 | 055-670-7003 |
| | 울산 | 052-290-5302 |
| | 진주·산청 | 055-760-2534 |
| | 의령 | 055-570-6017 |
| | 함안 | 055-580-0320 |
| | 창녕 | 055-530-7772 |
| 밀양 | 055-359-6309 | |
| 제주본부 | 창원 | 055-250-2243 |
| | 사천 | 055-851-8122 |
| | 거창·함양 | 055-940-5524 |
| | 합천 | 055-930-8263 |
| | 하동·남해 | 055-880-5126 |
| | 서귀포지부 | 064-750-8885 |

국민과 함께하는 농촌,
힘차게 도약하는 농업

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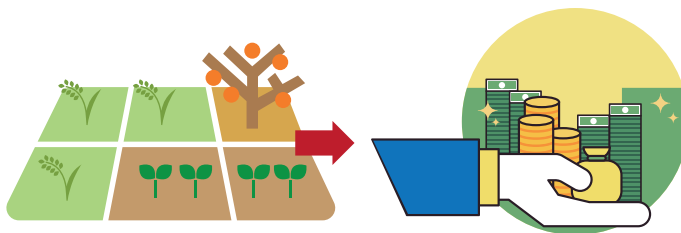
신청 안내



농지이양 은퇴직불제란?

고령 농업인(65~79세)의 영농 은퇴 유도과 은퇴 이후의 **생활 안정**을 돕기 위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**매도** (매도 조건부 임대 포함) 이양하는 경우 **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**을 지원(최대 10년) 하는 제도

고령 농업인에 이양받은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**청년 농업인**에 우선 제공하여 **농업 생산성 향상**과 스마트팜, 그린바이오 등 **미래농업 준비**를 위해 활용 하도록 지원



농지이양 은퇴직불 신청 대상과 지원 기준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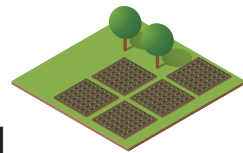
신청 대상 요건



농업인 요건

2024년 1월 1일 현재 **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**(1945년 1월 1일~1959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) 중 **10년 이상 계속 하여 농업경영**을 하고 있는 농업인

농지 요건



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로서 **3년 이상**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·밭·과수원

보조금 지급 요건

소유농지 중 **경작이 허용되는 농지(1천제곱미터 미만*)** 이외 농지를 이양하고, **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함**

* 소유농지 중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농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**3천제곱미터** 이하인 농지

지원단가*

(매도) 1ha당 매월 **50만원**,
(매도 조건부 임대) 1ha당 매월 **40만원**

* 경작 허용 농지가 1,000㎡ 이상 3,000㎡ 이하인 경우 공익직불금 수령액 만큼 차감 지원

지급상한 면적

4ha(매도 및 매도 조건부 임대 면적 합산)
- 지급한도 : (매도) 월 **200만원**(4ha 기준),
(매도 조건부 임대) 월 **160만원**(4ha 기준)



지급 기한

가입 연령별 최장 **10년간, 84세까지** 지원

| 연령 | 79세 | 78세 | 77세 | 76세 | 65세 이상 75세 |
|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|
| 지급기간 | 6년 | 7년 | 8년 | 9년 | 10년 |

농지이양 방식별 지원 혜택은?

매도(ha당)

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*에 **매도**하는 방식으로 이양

* 청년농업인 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도 포함

지원
혜택

농지이양 은퇴직불금(월 50만원) +
농지 매도대금(공사 매도시) 지급

매도 조건부 임대(ha당)

농업인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**임대**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매도하는 **은퇴직불형 농지연금**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양

농지이양 은퇴직불금(월 40만원)

+

은퇴직불형 농지연금(월 300만원, 최대한도)

+

농지임대료

+

농지 매도대금(농지연금 채무액 제외)



농지이양 은퇴직불 예비사업대상자 신청 방법은?

신청·접수 기간

2023년 11월 1일부터~

신청방법

농지이양 방식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**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**
* 사업 신청 시 필요 서류는 관할 지사에 문의

본 사업대상자 확정

예비사업대상자로 신청한 농업인은 우선적으로 **2024년 본사업 대상자로 전환**

문의

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1577-7770,
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별 관할 지사

농지이양 은퇴직불 묻고 답하기

1. 이전 연도에 농지이양한 농지도 당해연도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→ 신청할 수 없음.
당해 연도에 농지이양하는 농지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

2. 농지이양 후 계속 경작이 허용된 농지란 어떤 농지인가요?

→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대해서 경작 허용.
다만, 소유농지 중 **지급 대상 농지**(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)가 아닌 농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**3천 제곱미터**까지 경작이 가능함